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6
----------	-----

제출년월일 : 2002. 11 .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1999. 8. 9일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하는 단서 신설이 필요함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
-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공고에 따라 처리구역내 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요금표 및 업종별구분표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1999. 8. 9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배수설비준공검사 절차 규정 및 준공검사 신청 서식 신설(제4조의2)
- 나. 법 제18조 및 규칙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규정(제5조의2)
- 다. 법 제28조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제5조의3)
- 라.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공고에 따라 처리구역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금표(상수도요금의 40%) 및 업종별구분표를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정(제10조 별표 서식)
- 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에 의한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 규정(제12조)
- 바.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이중부담을 방지하도록 개정(제15조)

현행	개정안
<p><u>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u></p> <p>다만, <u>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u></p> <p>1)~2)(생략) ③~④(생략)</p> <p><u>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동·면장에게 위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u> 2. <u>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u> 3. <u>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u> 4.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u> 5. <u>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u> 6. <u>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u> 7. <u>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u> 8. <u>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u> 9. <u>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접용료의 징수</u> 	<p><u>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u><u>부담액.....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u><u>한다.</u></p> <p>다만, <u>배수설비.....</u><u>한다.</u></p> <p>1)~2)(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p> <p><u>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동·면장에게 위임한다.</u></p> <p>1.~15.<삭제></p>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의2중 “별지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5조의3(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법 제28조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종말처리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의 설치·개축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확장 및 수선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정비사업의 소요비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된 사업을 동·면장이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동·면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 “별표1의 요율”를 “별표1의 요율과 별표1-1의 구분표”로 한다.

제10조(사용료)중 “별표1” 및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중 “30톤”을 “100톤”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중 제1호 내지 제1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2.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제10조(사용료) 관련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 및 “별표1-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한 달의 익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하수도 사용 요금표

업종별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량(m ³ /월)	m ³ 당단가(원)	
가 정 용	0~20	160	
	21~30	220	
	31이상	310	
일 반 용	0~50	240	
	51~100	380	
	101~300	410	
	301~1,000	490	
	1,001이상	580	
대 중 목욕탕용	0~1,000	280	
	1,001~1,500	320	
	1,501~2,000	380	
	2,001이상	450	

주) 1.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및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업,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훈단체,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및 기관, 단체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흥업소, 단란주점,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병원, 금융기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음식점,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 방송국, 신문사, 지압업, 각종 제조업 등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 및 단체 관공서, 병영, 학교, 정당, 종교단체, 공익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 호텔내 고급사우나, 찜질방 등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사설소화전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 단계요율 적용) · 운반급수(최종 단계요율 적용)
대중목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 목욕장업(목욕탕, 일반사우나 등)

주) 1. 상기 내용에 명기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신설>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산업폐수·축산폐수·기타()폐제			
	설치위치	김포시 동·면 리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PE관·PC관·흙관·강관·주철관·기타()관			
	관 경	\varnothing m/m	연 장	m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공사비	천원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	보완사항	2차검사 (,)	비 고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100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5.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6.기타 특기사항				
	검 사 자	성명 : (인)		성명 :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기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보완 후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제3항 및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신청인 : (인) </div>					
김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u>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u> <u>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u></p> <p><u>②</u>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신설>	<p><u>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u> <u>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u> <u>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u>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0조(사용료) ①(생략)</p> <p>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생략)</p>	<p>제5조의3(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법 제28조에 의한 시장의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종말처리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의 설치·개축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확장 및 수선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정비사업의 소요비용 <p>②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동·면장이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동·면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별표1의 요율과 별표1-1의 구분표.....</p> <p>.....</p> <p>.....</p> <p>③(현행과 같음)</p>

사. 동·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실제 동·면에서 처리하는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으로 개정(제22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말췌서 : 별첨

- 하수도법 제9조, 제18조, 제21조, 제28조
-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 실시 : 2002. 10. 30 - 11. 18(20일간), 결과 : 이의신청없음

기타참고사항

-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원안가결)

헌 행	계 정 안
<p>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p> <p>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p> <p>1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p> <p>1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p> <p>1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p> <p>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신설></p>	<p>1.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신고</p> <p>2.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징수</p>

[별표1]

하수도 사용 요금표

현행				개정안			
구분 업종	기본요금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비고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단가 (원)		사용량 (m ³ /월)	m ³ 당단가 (원)	
일반용		1~10		가정용	0~20	160	
		11~20			21~30	220	
		21~30			31이상	310	
		31~40					
		41~50					
업무용		1~20		일반용	0~50	240	
		21~50			51~100	380	
		51~100			101~300	410	
		101~300			301~1,000	490	
		301이상			1,001이상	580	
영업용		1~30		대중 목욕탕용	0~1,000	280	
		31~50			1,001~1,500	320	
		51~100			1,501~2,000	380	
		101~500			2,001이상	450	
		501이상					
목욕탕		1~500		대중 목욕탕용	0~1,000	280	
		501~700			1,001~1,500	320	
1종		701~1,000		대중 목욕탕용	1,501~2,000	380	
		1,001이상			2,001이상	450	
		1~200					
		201~300					
		301~500					
2종		501이상		대중 목욕탕용			
		1~200					
		201~300					
산업용		m ³ 당		<삭제>	<삭제>	<삭제>	

주) 1.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현행과 같음)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삭제>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행		계 정 안	
업종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및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천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및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업,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교아원, 영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훈단체,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공선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식품점객업소, 공인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및 기관, 단체 · 식품점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흥업소, 단란주점,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병원, 금융기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 방송국, 신문사, 지압업, 각종 제조업 등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 및 단체 · 관공서, 병영, 학교, 정당, 종교단체, 공익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 호텔내 고급사우나, 켄질방 등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시설소화전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 단계요율 적용) · 운반급수(최종 단계요율 적용)

현행		개정안	
업종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내용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타장업, 체육지도자업, 비타민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융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물원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도산장, 정육점 ·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제가공 포함), 인료제조(교압가스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가공업, 식류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원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급업(도급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식품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일반용	
욕탕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대중 목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 목욕장업(목욕탕, 일반사우나 등)

현행		개정안	
업종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내용
육탕용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복육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헥스칼럼과 인제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체 재배업소 	<삭제>	<삭제>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삭제>
2.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삭제>
3. 상기 내용에 명기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第9條 (사용의 公告등)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이 公共下水道의 使用을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使用開始年月日·排水區域(下水終末處理施設일 경우에는 그 下水處理區域)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公告하고 관계圖面을 一般에게 供覽 시켜야 한다. <改正 82·12·31, 94·8·3>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下水處理區域안의 下水管渠가 汚水· 빗물이 같이 흐르는 合流式管渠이고, 그 排除된 下水가 公共下水道로 流入되는 경우에는 그 下水終末處理施設의 使用개시이전에 設置되어 가동중인 汚水處理施設을 單獨淨化槽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4·8·3, 99·2·8 法5864, 2001·3·28>

第18條 (設置 및 管理에 관한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改正 82·12·31>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削除 <93·12·10>

[전문개정 73·2·8]

第4章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

第28條 (費用負擔)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公共下水道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한 이후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후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 기준에 의거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3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축복의 땅 · 살기좋은 김포 -



김포시수도사업소

정보통신망

우 415-810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 /전화:(031) 980-5131 /FAX:(031) 980-5421
 수도사업소 소장 이일우 팀장 전상권 담당자 오현철

문서번호 수도67712-13803

시행일자 2002. 11. 21.

(경유)

발 음 내 부 결 재

참 조

보존기간	1년	소 장	
공개여부	공 개	이일우	
		팀장 전상권 <i>전상권</i>	
기안	오현철		
심사자		심사일	

제 목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고 결과 보고

1. 수도67712-13535('02.10.31)호와 관련하여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시청게시판과 동·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2.10.30 ~ 11.18(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게시판 및 동·면게시판(인터넷게시판 포함)

다. 공고결과 : 주민의견 없음

붙 임 : (동·면)입법예고 결과 공문 9부."끝.

김포시수도사업소장

받는곳:

자치법규입법예고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30 일

김 포 시



1. 조례건명 :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

2. 개정취지

- 1999. 8. 9일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하는 단서 신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
-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요금표 및 업종별 구분표 개정

3. 주요내용

- 가. 1999. 8. 9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배수설비준공검사 절차 규정 및 준공검사 신청 서식 신설(제4조의2)
- 나. 법 제18조 및 규칙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규정(제5조의2)
- 다. 법 제28조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규정(제5조의3)
- 라.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공고에 따라 처리구역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금표(상수도요금의 40%) 및 업종별

구분표를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정(제10조 별표 서식)

- 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에 의한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 규정(제12조)
- 바.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이중부담을 방지하도록 개정(제15조)
- 사. 동·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실제 동·면에서 처리하는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으로 개정(제2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포시장(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축복의 땅·살기좋은 김포 -

김 포 시

우415-728/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031)980-2276/전송(031)980-2279
지역경제과 과장 이원경 지역경제팀장 조재덕 담당자 이항원

문서번호 지경 13600-13075

시행일자 2002. 10. 07.

받 음 수도사업소장

참 조

선 람	이원경		지 시		
접	일자	2002.10.11	결 재		
	시간	:			
수	번호	1420P	공 람	팀장 재직인	
처 리 과					
담 당 자	전포대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 제32조에 의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심의일시	회의장소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02-1	2002.10.04	시청 본관2층 소회의실	상수도 업종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인상 심의안	제2안 원안기결	
2002-2	2002.10.04	시청 본관2층 소회의실	하수도 시용업종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부과 심의안	제2안 원안기결	

끝.

김 포 시

“ 참여하자 바르게살자 다시뛰자 ”

